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91
----------	------

제출년월일 : 2004. .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여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 위원을 확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심의를 통하여 동 조례의 제정취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 또는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중 용역비(예산액)가 1천만원이 상인 용역으로 조정함 (안 제2조).
- 나. 위원회 위원수를 10인이내에서 15인이내로 확대하고 본청 국장 및 상하 수서사업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정함 (안 제4조).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4. 10.20. ~ 2004. 11.8.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 또는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중 용역비(예산액)가 1천만원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용역의 수행방법이 따로 정하여진 용역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중 “10인”을 “15인”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3명과 용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5조제1호중 “과업지시”를 “과업내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용역과제 사전 심의안” 중 “과업지시서”를 “과업내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기획예산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기획예산과장 이 범 영
	담당·팀장 직위·성명	투자분석팀장 원 운 희
	담당자 성명·전화	원 운 희 (행정 2058)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지도 사업관리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 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사업 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p>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 또는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중 용역비(예산액)가 1천만원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용역의 수행방법이 따로 정하여진 용역은 이를 제외한다.</p>

현 행	개 정 안
<p><u>제3조(용역과제 심의대상) 용역과제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u></p> <p>1. 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3천만원이상.</p> <p>2. 공사설계용역,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이상.</p> <p>3. 연구·학술용역 및 기타용역과제는 용역비 1천만원이상.</p>	<p><u>〈삭 제〉</u></p>
<p><u>제4조 (위원회) ① (생 략)</u></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u>10인</u>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생 략)</p> <p>④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경제국장, 시의원3명, 그리고 관계전문가 및 용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u>제4조 (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u></p> <p>②----- <u>15인</u>-----</p> <p>-----</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3명과 용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p>
<p><u>제5조 (기능) 위원회는 용역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p>1. 용역과제 선정 및 <u>과업지시</u>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p> <p>2. ~ 3. (생 략)</p> <p>(별지 제1호서식) 용역과제 사전 심의안(서식 생략)</p> <p>1. ~ 4. (생략)</p> <p>5. 기타 참고사항(<u>과업지시서</u>)</p>	<p><u>제5조 (기능)</u> -----</p> <p>-----</p> <p>1. ----- <u>과업내용</u> -----</p> <p>-----</p> <p>2. ~ 3. (현행과 같음)</p> <p>(별지 제1호서식) 용역과제 사전 심의안(서식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기타 참고사항(<u>과업내용</u>)</p>

안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증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291
----------	------

제안년월일 : 2005. 1. .
제 안 자 : 의회행정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조례 취지에 맞게 각종 용역 정의를 기술하고 용역의 효율성,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비를 상향 조정하고 당연직 위원의 수를 축소함.

2. 주 요 골자

-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 등 각종 용역의 정의를 규정함(안제2조)
- 용역과제 심의대상 내용을 신설함(안제3조)
- 위원수를 “15인”에서 “10인”으로 축소하고, 당연직 위원중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외하고 기획경제국장만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함(안제4조)

안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 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 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사업 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용역과제 심의대상) 용역과제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령과 다른 조례에 의하여 용역의 수행방법이 따로 정하여진 용역은 제외한다.

1. 기술요역과제는 용역비 3천만원 이상.
2.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10억원 이상.
3. 연구·학술용역 및 기타용역과제는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제4조 제2항중 “15인”을 “10인”으로 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아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경제국장, 시의원3명, 그리고 관계전문가 및 용역에 관한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 또는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 중 용역비(예산액)가 1천만원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용역의 수행방법이 따로 정하여진 용역은 이를 제외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 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사업 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p>< 신 설 ></p>	<p>제3조(용역과제 심의대상) 용역과제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령과 다른 조례에 의하여 용역의 수행방법이 따로 정하여진 용역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요역과제는 용역비 3천만원이상. 2.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10억원 이상. 3. 연구·학술용역 및 기타용역과제는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원 안	수 정 안
<p>제4조(자문위원회) ①(생략)</p> <p>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u>15인</u>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생략)</p> <p>④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3명과 용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p>	<p>제4조(자문위원회) ①(원안과 같음)</p> <p>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u>10인</u>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원안과 같음)</p> <p>④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경제국장, 시의원 3명, 그리고 관계전문가 및 용역에 관한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